

[일련번호 : 2]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목적외사용 및 집행과목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도별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양천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예산편성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는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중 행정운영경비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하고 있다. 기본경비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부서 운영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수용비, 잡품비, 소모

성 물품구입 등), 위탁교육비, 심사수당, 피복비(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 등),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기타보상금(301-11)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으로, 연금부담금(304-01)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금(304-12)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기본경비가 부서 운영에 필수적인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임에도 특정 사업비에 이를 사용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홍보모델 출연료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총 25건, 9,948천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세부사업 및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내역

연번	일자	적요	지출액(원)	부적정 내역 (적정과목)
1	2023-08-17	***** 홍보 포스터 인쇄 및 대봉투 제작구매	447,26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집행
2	2023-09-07	***** 홍보 포스터(2종) 제작 비용 지급	520,00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집행
3	2023-04-04	2023년 3월분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납부	281,630	연금부담금으로 집행 (적정 : 국민건강보험금)
4	2022-01-21	제8기 양천구민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2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5	2022-03-17	제8기 양천구민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4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6	2022-04-22	제8기 양천구민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7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7	2022-05-27	제8기 양천구민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4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8	2022-08-18	제8기 양천구민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4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9	2022-10-24	제8기 양천구민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3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10	2022-12-09	제8기 양천구민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5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11	2023-01-19	제8기 양천구민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1,1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12	2023-02-27	제8기 양천구민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4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연번	일자	적요	지출액(원)	부적정 내역 (적정과목)
13	2023-04-18	제8기 양천구민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2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14	2023-08-07	제8기 양천구민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4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15	2023-10-25	제9기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2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16	2023-11-14	제9기 홍보모델 출연료지급	2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17	2023-12-15	제9기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4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18	2024-06-12	제9기 홍보모델 출연료지급	2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19	2024-06-13	양천가족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2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20	2024-06-20	제9기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2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21	2024-07-16	제9기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3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22	2024-08-12	제9기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2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23	2024-10-28	제9기 양천구민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1,0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24	2024-10-29	제9기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4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25	2024-12-16	제9기 홍보모델 출연료 지급	400,000	사무관리비로 집행 (적정 : 기타보상금)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홍보모델 운영은 내부 방침 및 약정서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집행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었으며, 사무관리비로 홍보모델 출연료를 집행함이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통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